

## □ 검토 배경

-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(이하 “실제 사업주” 라 한다.)는 일반 중소기업사업주와 동일한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주(이하 “명의 사업주” 라 한다.)가 아님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사가 있어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.

-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

※ 고용노동부 「산재 보상·적용 관련 업무처리방안」 시달('18.6.18)

## □ 개선 방안
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(이하 “명의 사업주” 라 한다.)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(이하 “실제 사업주” 라 한다.)가 배우자 관계(법률혼)인 경우 실제 사업주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허용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|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<br>특례 가입 대상 | ▶ 명의 사업주 | ▶ 명의 사업주<br>▶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인<br>실제 사업주 |

## □ 업무처리 방법

- (가입대상 확인)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(법률혼에 한함)가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 확인

- (배우자 여부)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를 제출받아 확인

- (실제 사업주 여부) 실제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확인서\*를 징구

\* (붙임 양식 참고) 실사업주 확인 문구는 반드시 자필로 받아 보관

- (자격 확인)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중소기업사업주 중 아래 직종은 자격 요건을 추가적으로 확인

---

❖ **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·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· 건설기계사업자 · 자동차정비업**

- ① 명의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
  - ② 실제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른 운전(조종) 등 면허 보유 여부
- 

- (처리방법) 실제 사업주를 근로자 사용 사업장의 산재보험 공동대표로 등록\* 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처리

\* (기존 행정 해석 유지)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명의상 사업주에 한함. 따라서 사업장 보험가입자를 실사업주로 변경처리는 불가함에 유의

## ☐ 행정 사항

- 지침 시행일 이후 접수 되는 「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」 부터 적용

## □ 검토 배경

- 건설업에서 노동자와 같이 작업을 하는 건설업 하수급인의 경우 원수급인에 비해 산재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 발생

- 이에 건설업 하수급인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적용 검토

※ 고용노동부 「산재 보상·적용 관련 업무처리방안」 시달('18.6.18)

## □ 개선 방안

-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

-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하수급인도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특례 대상으로 포함

※ (건설업 하수급인의 정의)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(보험료징수법제2조제5호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대상 | ▶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하는 건설업 원수급인 | ▶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하는 건설업 원수급인<br>▶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하는 건설업 하수급인 |

## □ 업무처리 방법

### ① 「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주」 인 건설업 하수급인

- (적용 대상)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 하수급인 중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하는 자

- (상시근로자수 판단)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 기준\*에 따라 50명 미만 여부 판단 <기준과 동일>

\*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

- (보험 적용 방법)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 단위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<기준과 동일>

- 사업장 관리번호에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

※ 하도급공사에서 업무상 재해 발생시 (하)도급계약서 등으로 하도급공사의 사업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

※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주 중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한 자는 1개의 산재보험 특례 보험관계로 건설업 원수급인 자격 및 하수급인 자격의 모든 현장에 대한 보험 관계 성립(원·하수급 자격별 별도 가입 불필요)

## ② 「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주」가 아닌 건설업 하수급인

- (적용 대상)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 하수급인 중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하는 자

- (상시근로자수 판단) 해당 공사에서 하수급인이 도급 받은 공사금액에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근로자 50명 미만 여부 판단

---


$$\text{상시근로자 수} = [(\text{해당 공사의 하도급공사금액} \times \text{하도급노무비율}) \div (\text{건설업 월평균보수} \times \text{조업개월수})]$$


---

※ 하도급공사금액 및 하도급공사기간이 (하)도급계약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

- (보험 적용 방법) 해당 공사건별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

- 사업장 관리번호에 해당 공사건의 원도급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

## □ 행정 사항

- (적용 시기) 지침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공사부터 적용(하도급공사 착공일 기준)
  - 다만, 「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주가 아닌 건설업 하수급인」에 대한 업무 처리는 전산 화면 개선 완료시까지 처리 보류(문서 접수 철회)
    - ※ 전산 개선 완료 후 별도 공문 알림 예정
- 동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 질의회시는 폐기

[붙임] 확인서 양식

# 실제 사업주 확인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|
| 사 업 장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|  |
| 사업장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|  |
| 사 업 장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|  |
| 사 업 장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|  |
| 사 업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연 락 처 |  |
| 보 험 가 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|  |
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연 락 처 |  |
| 명의상 사업주와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|  |
| 확 인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|  |
| <p>보험가입자 000은 명의상 사업주 △△△의 법률상 배우자이며, □□□ 사업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주임을 확인합니다.</p> |  |       |  |

년 월 일

위 확인자      사 업 주      (서명 또는 날인)  
 보험가입자      (서명 또는 날인)